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과 감사품질에 관한 인식조사*

황인태** / 강선민*** / 이미주****

I. 서론
II. 연구배경
III. 연구 설계

IV. 분석 결과
V. 결론

개요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상장기업 감사인 등록요건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감사인 등록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총 466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감사인 등록요건에 대하여 감사인과 비감사인 간 유의한 차이가 있고 감사인 규모에 따라서도 견해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항목에서 비감사인 그룹이 인지하는 정책 타당도가 감사인보다 높았다. 특히 공인회계사 인원 기준(40명 이상), 경영통합 관리체계 구축, 감사업무 수행인력 성과평가 기준, 품질관리업무 인력의 보수 기준에 대해 감사인의 저항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사인 규모별로 등록요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8개 항목은 Big4에 비해 여타 회계법인이 응답한 타당도가 유의하게 낮아 증견 및 중소회계법인이 상대적으로 감사인 등록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부 등록요건에 대해서는 Big4의 호응이 비감사인보다 높았는데, 이들 요건은 Big4가 이미 충족하고 있거나 쉽게 충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일 수 있다. 등록요건을 Big4는 쉽게 달성할 수 있으나 중소회계법인은 준수하기 어렵다면, 감사인 등록제로 감사시장 구조가 왜곡되고 시장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비감사인 응답자는 회계법인의 지배구조 및 감사인력의 보상체계 개선에 감사인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품질 개선을 위한 감사인 조직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사인이 인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감사품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등록요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좁히고 제도순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인과 비감사인 간 인식의 차이 및 감사

* 이 논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보고서에 기초하고 있음.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주저자), e-mail: ithwang@cau.ac.kr, 이 논문은 2019년도 중앙대학교 연구년 결과물로 제출됨.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공동저자), e-mail: skang@cau.ac.kr

****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과장(교신저자), e-mail: mijoolee@bok.or.kr
투고일(2020년 6월 12일), 게재확정일(2020년 7월 29일)

인 그룹별 견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감사품질과 연관된 감사인 등록요건에 대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상대적 타당성의 인식 차이를 통계적 검증을 통하여 제시함으로써 증거기반의 감사인 등록 정책 개선방안 도출에 기여한다. 최근 다수 상장기업들의 감사인 재지정 요구는 감사인 등록제도의 운영과 정착을 위해 이해관계자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어 : 감사인 등록제, 감사인 등록요건, 감사인 재지정, 경영통합관리체계, 중소기업법인

I. 서론

2017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면 개정으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었다. 감사인 등록제는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인력과 설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감사인 등록제 도입 목적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감사품질 제고에 있다. 금융위원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한 회계법인만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의 외부감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감사인 품질관리 평가지표를 감사인 등록 요건으로 설정하였다. 품질관리 평가지표에는 40명 이상의 등록공인회계사의 상근 등 인력 요건을 비롯해 전산시스템 등의 물리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어,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계적 조직이 필요하다.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내 회계법인이 감사품질을 중심으로 조직화하고 규모를 확대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감사인 등록제와 동시에 시행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법인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감독기관이 지정하는 제도로서, 미등록감사인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서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은 상장법인 감사인 지정의 선행요건이 된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과 지정기준은 외부감사 시장 진입 조건이 되므로 감사시장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외감법 개정안이 회계법인 간 양극화를 야기하고 기업경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¹⁾. 2019년 말 기준 총 184개의 회계법인 중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인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계법인이 138개(75%)에 달하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은 감사인 등록 및 지정

1) 연합뉴스(2019.5.5), “상장사 감사인등록 출발부터 잠음…중소 회계법인 반발”, <https://www.yna.co.kr/view/AKR20190503170500008> / 서울경제(2019.4.15.), “‘헌법소원도 불사’…신외감법에 불난 중소기업법인”, https://m.sedaily.com/NewsView/1VHV YXZ7KF#_enliple / 세계일보(2019.4.26.), “‘감사인등록’ 불난 회계법인 ‘위헌소송 준비’”,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11479

과 관련한 회계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 방법을 변경하고 감사인 지정 시기를 단축하는 등의 방안²⁾을 마련하였으나, 중소형 회계법인은 감사인 등록요건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감사인 등록제도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감사품질을 제고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감사인 등록제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의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과 감사인, 감독당국 간 견해 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감사인 등록제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감사인 등록요건에 대한 상대적 상대성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감사인 등록요건에 대하여 감사인과 비감사인 간 유의한 차이가 있고 감사인 규모에 따라서도 견해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항목에서 비감사인 그룹이 인지하는 정책 타당도가 감사인보다 높았다. 특히 공인회계사 인원 기준(40명 이상), 경영통합관리체계 구축, 감사업무 수행인력 성과평가 기준, 품질관리업무 인력의 보수 기준에 대해 감사인의 저항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사인 규모별로 등록요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8개 항목은 Big4에 비해 여타 회계법인이 응답한 타당도가 유의하게 낮아 중견 및 중소회계법인이 상대적으로 감사인 등록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부 등록요건에 대해서는 Big4의 호응이 비감사인보다 높았는데, 이들 요건은 Big4가 이미 충족하고 있거나 쉽게 충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일 수 있다. 등록요건을 Big4는 쉽게 달성할 수 있으나 중소회계법인은 준수하기 어렵다면, 감사인 등록제로 감사시장 구조가 왜곡되고 시장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비감사인 응답자는 회계법인의 지배구조 및 감사인력의 보상체계 개선에 감사인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품질 개선을 위한 감사인 조직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감사인이 인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감사품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등록요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좁히고 제도순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인과 비감사인 간 인식의 차이 및 감사인 그룹별 견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에 대한 감사인과 비감사인, 감사인 그룹 내 대형회계법인(Big4)와 중견 및 중소회계법인 간 인식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차이의 배경을 제시한다. 이는 증거에 기반을 둔 감사인 등록제도의 보완 및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향후 본 연구와 관련된 실증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상장사 감사인 등록과 관련하여 감사계약 영업을 위해 등록 방법을 변경(일괄 등록 → 수시 등록)하고, 감사인 지정과 관련하여 감사 준비시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시기를 단축(예: 11월 → 8월)하였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11.11),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新외감법 공포 2년 즈음한 「회계개혁 간담회」 개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감사인 등록요건과 감사품질의 관계를 제시한다. 3장에서는 연구의 설계를 설명하고 4장에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II. 연구배경

1. 감사인 등록제도

감사인 등록제는 감사인에 대한 행정기관의 평가를 기반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현행 외감법의 배경은 감사인 등록제도 이전부터 실시되던 감독기관의 감사인 평가에서 찾을 수 있다. 외부감사인에 대한 평가는 1997년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에 대하여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에 위탁하였고, 평가대상, 항목 및 배점, 평가 시기, 평가 방법, 평가 심의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KICPA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였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01년부터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관한 감리업무를 실시하였고, 2006년에는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감리업무를 도입함으로써 회계감사와 관련된 평가 범위를 확대해 왔다. 이와 같은 증권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를 위한 회계감리 강화의 연장선상에서 2019년에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가 도입되었다.

감사인 등록제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자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된 외감법 제9조의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는 감사인 등록제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한다. 동 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으로서 감사품질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충분한 인력, 예산, 물적 설비와 감사품질 관리를 위한 사후 심리체계, 보상체계, 업무방법,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여야 한다. 외감법 시행령 제11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는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4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정 제8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등)는 금융감독원장이 등록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신청인이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에서 명시하는 등록요건은 <표 1>과 같다.

상장기업 감사인 등록제도는 이미 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감사인 등록제도의 실

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미국의 감사인 등록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Sarbanes-Oxley Act(2002)에 따라 미국 상장법인회계감독국(PCAOB,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에 등록하지 않은 회계법인은 미국 내 공개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수 없다. PCAOB는 등록회계법인의 감사관련 서류와 품질관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적발된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또는 제재를 한다. 감독기관이 등록된 감사인에 대해서 감사품질을 감독하고 관리한다는 점은 한국과 비슷하다. 그러나 PCAOB의 감사인 등록제는 외감법의 감사인 등록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표 2>의 PCAOB 감사인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및 등록 절차에는 감사품질 관련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³⁾. 즉, 세부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PCAOB 감사인 등록신청 요건은 회계법인 조직에 대한 개요 정도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감사인 등록제도와 상이하다.

<표 1>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제8조 제1항 관련 [별표1])

| | |
|-------------------|---|
| 인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시 근무 공인회계사 수 ②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경력기간 ③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경력기간 ④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담당자의 업무 범위 ⑤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
|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사, 자금관리, 수입 및 품질관리 등 경영통합관리체계 ②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③ 독립성 점검·관리 체계 ④ 개별 감사업무 담당 이사 선정 절차 및 방법의 공정성·투명성·합리성 ⑤ 외부감사 업무 수행에 투입한 시간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 체계 ⑥ 감사조서 등 감사관련 정보의 생산·보전 체계 |
| 심리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경력 5년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심리를 수행 ② 심리 대상·범위·방법·절차, 심리담당자 자격요건, 권한 및 책임 등 규정화 ③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 크거나 감사위험이 높은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서명 전 사전심리 ④ 감사업무 수행 이사의 30% 이상에 대하여 감사보고서 심리 실시 ⑤ 중요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내용 문서화 |
| 보상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감사업무 수행 이사의 성과평가시 감사업무 품질 평가지표 비중을 70% 이상으로 설정 ②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담당자에 대해 소속집단 평균 연봉 이상 지급 |

3) 등록신청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은 공개되어 있으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표 2〉 PCAOB 등록신청에 관한 세부내용

| | |
|----------|--|
| 첨부 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명, 연락처, 주소, 조직도 등 개요 • 전년도 및 당해연도 감사대상 회사명, 감사보고서일, 감사보수, 기타 비감사용역보수 • 품질관리 정책에 대한 설명 • 형사, 민사, 행정조치 내역 및 진행 중인 민사소송 • 감사대상 증권발행인과의 회계상 의견 불일치 내용에 대한 설명 • 감사업무참여 공인회계사명,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 및 전체 고용인원의 수 • PCAOB 업무에 대한 협조동의서 ; 회계법인 및 관계자에 대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 위함이며, 계속 등록의 유효조건으로 이에 동의한다는 진술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함 |
| 등록 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의 절차를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승인 서면통보 - 중대한 오류 또는 미비점에 대한 추가정보 요청 - 불승인 사유를 기술하여 서면통지 |
| 수수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대상 증권발행인 수에 따라 정해진 일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PCAOB에 등록된 일부 회계법인은 2004년 등록 이후 매년 회계법인의 일반현황, 미국 상장 회사에 대한 감사보수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별도의 등록 유지를 위한 심사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감사품질과 관련된 일정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등록감사인 지위를 유지하는 조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감독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등록신청 시 청구하는, 회계법인 및 관계자에 대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PCAOB 업무에 대한 협조동의서를 제외하면, 여타의 제출서류는 사실의 확인을 위한 문서로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것을 규정하지 않는다.

PCAOB는 감사품질 지표로 감사인력(audit professionals), 감사과정(audit process), 감사결과(audit results)를 제시한다.⁴⁾ 감사인력에 대한 감사품질 지표는 가용인력을 평가하기 위한 감사담당이사 당 감사 참여인원과 담당이사 및 감사참여자의 업무량, 인적 역량을 판단하기 위한 감사 참여자의 경험, 산업에 대한 전문성, 교체율 등이 있다. 감사과정에 대한 감사품질 지표에는 감사보수 및 노력, 독립성과 관련된 법규준수수준, 회계법인 내부의 심리 결과, 감독당국의 품질관리결과 등이 포함된다.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품질 지표로는 재무제표 재작성의 빈도와 규모, 재무보고 품질측정치를 통한 감사품질 측정, 내부통제 취약점의 적시보고, 계속기업 문제점의 적시보고 등이 제시되어 있다(최주안 등 2016). 이 중 대부분의 감사품질 지표를 감사인 등록 신청 시 감사인이 제출하는 자료로는 평가할 수 없다. 이는 감사품질 수준이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정한 품질 요건을 충족해야 감사인 등록

4) PCAOB 감사품질 지표에 대한 개념(Concepts of audit quality indicators, PCAOB Release No. 2015-005, 2015.7.1.)에서 제시

과 유지가 가능한 한국의 감사인 등록제와 달리, PCAOB의 회계법인 등록제도는 감독기관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받도록 하기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PCAOB에 등록된 국내 회계법인 중에는 소속 회계사 40인 미만인 중소회계법인도 있어 감사인의 규모 등을 기준으로 등록을 제한하지 않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등록절차는 단순하지만 PCAOB는 강도 높은 사후조사를 통해 감사품질을 관리한다. 이는 물리적, 조직적 외형이 실질적인 감사품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표 3〉 PCAOB에 등록한 국내회계법인 현황

| | 2007년 | | | | 2019년 | | | |
|----|-------|---------|----------|------------|-------|---------|----------|------------|
| | 법인명 | 소속 CPA수 | 미국 상장법인수 | PCAOB 등록연월 | 법인명 | 소속 CPA수 | 미국 상장법인수 | PCAOB 등록연월 |
| 1 | 삼일 | 1,486 | 7 | 2004.06 | 삼일 | 2,008 | 4 | 2004.06 |
| 2 | 안진 | 702 | 5 | 2004.07 | 안진 | 942 | 1 | 2004.07 |
| 3 | 삼정 | 508 | 3 | 2004.06 | 삼정 | 1,577 | 5 | 2004.06 |
| 4 | 한영 | 574 | - | 2004.06 | 한영 | 1,048 | - | 2004.06 |
| 5 | 대주 | 157 | - | 2004.06 | 대주 | 341 | - | 2004.06 |
| 6 | 신한 | 141 | - | 2004.08 | 신한 | 212 | - | 2004.08 |
| 7 | 삼덕 | 142 | - | 2006.03 | 삼덕 | 444 | - | 2006.03 |
| 8 | 성도 | 38 | - | 2005.11 | 성도이현 | 136 | - | 2005.11 |
| 9 | 대명 | 22 | - | 2006.03 | 우리 | 137 | - | 2008.07 |
| 10 | 신원 | 19 | - | 2004.08 | 세일 | 38 | - | 2012.10 |
| 11 | 총정 | 27 | - | 2004.07 | 이춘 | 124 | - | 2014.11 |
| 12 | 예일 | 12 | - | 2006.05 | 한울총정 | 175 | - | 2015.09 |

감사인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PCAOB의 등록제와 달리, 외감법의 감사인 등록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품질을 갖추지 못한 감사인의 상장회사 회계감사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미등록 회계법인은 상장회사 외부감사를 수임할 수 없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 이 때문에 등록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회계감사 시장의 구조가 재편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등록감사인만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는 지정감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감법 개정에 따른 상장법인 감사인의 주기적 지정제 도입 이전부터 증권선물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해왔다⁵⁾. 직권지정의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지정감사가 자유수임 감사계약에 비하여 높

5) 감리조치, 관리종목, 상장예정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며, 회사는 지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감사인 지정 사유는 외감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은 감사보수를 받는다고 보고하였다(노준화 등 2003; 황인태·강선민 2006, 2014; 최주안 등 2016). 상장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와 지정사유는 다르지만, 이들 선행연구를 근거로 감독 기관의 감사인 지정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할 수 있다. 지정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분석한 결과, 지정기간 중 감사인은 비지정기간보다 높은 보수를 받지만 감리지적으로 감사인이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감사시간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인태·강선민 2006). 선행연구는 지정감사인이 감사시간을 추가 투입하지 않으면서 자유선임감사에 비하여 높은 시간당 감사보수를 받는 것은 지정감사인의 독점적 지위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지정감사인은 경쟁적 감사시장에서 발생하는 감사보수 할인 압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 자유수입계약에 의해 선임된 감사인보다 감사보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Shailer et al.(2004)은 감사인의 독점 정도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감사시장의 경쟁이 심할수록 감사보수의 할인이 이루어지는 반면 감사인의 독점력이 높은 감사시장에서는 감사원가의 절감이 실현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최주안 등(2016)도 지정감사인의 경우 감사보수 결정시 피감회사의 교섭력이 최소화되어 감사보수가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는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 제공, 지정기업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가능성, 감사 실패 시 조치의 가중 등을 고려하더라도 지정감사인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추가적인 감사보수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상장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지정대상 기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정감사보수가 등록감사인에게 집중되면 회계법인간 격차가 커져 회계감사 시장 구조가 왜곡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표 4>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격년으로 상장기업 규모별 Big4와 Non-Big4 감사인의 비율 변화를 보여준다. 상장기업이라도 규모가 작은 기업의 감사시장에서는 Big4 외(Non-Big4) 감사인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2010년 자산 규모 250억 미만 기업의 감사인 분포를 살펴보면 Big4가 33%, Non-Big4는 67%를 점유한다. 2018년 총자산 250억 미만의 감사시장의 경우 Big4는 10%로 줄어들었고 Non-Big4의 비중은 90%로 늘어났다. 이와 반대로 자산규모 1조 이상 기업의 감사시장에서는 Big4가 지속적으로 약 9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감사시장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장예정법인, 감사인 미선임, 감리결과 조치, 부채비율 과다 등의 재무기준 미충족, 관리종목, 횡령·배임 발생 등이 있다.

- 6) 2020 사업연도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는 1,224사로 2019 사업연도(699사) 대비 525사 증가(75.1%)하였다. 상장법인 중 지정회사 비율은 34.7%(807/2326)로 2019년의 12.7%(284/2230)에서 크게 상승하였으며, 주기적 지정으로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가 220사이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1.23.), 「2019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표 4〉 상장기업 규모별 감사인 분포 변화

| 총자산 | 250억 미만 | | 250억~500억 | | 500억~1000억 | | 1000억~4000억 | | 4000억~1조 | | 1조~5조 | | 5조이상 | |
|------|----------|------|-----------|------|------------|------|-------------|------|----------|------|----------|------|----------|------|
| | Non-Big4 | Big4 | Non-Big4 | Big4 | Non-Big4 | Big4 | Non-Big4 | Big4 | Non-Big4 | Big4 | Non-Big4 | Big4 | Non-Big4 | Big4 |
| 2010 | 44 | 22 | 120 | 85 | 206 | 155 | 217 | 290 | 33 | 106 | 9 | 104 | 0 | 66 |
| | 67% | 33% | 59% | 41% | 57% | 43% | 53% | 47% | 24% | 76% | 8% | 92% | 0% | 100% |
| 2012 | 43 | 20 | 124 | 74 | 212 | 163 | 245 | 322 | 33 | 136 | 7 | 115 | 0 | 73 |
| 2014 | 60 | 27 | 117 | 61 | 264 | 163 | 281 | 317 | 45 | 143 | 13 | 114 | 0 | 81 |
| 2016 | 86 | 21 | 140 | 48 | 294 | 156 | 373 | 342 | 52 | 152 | 15 | 119 | 1 | 86 |
| 2018 | 116 | 13 | 178 | 40 | 323 | 127 | 482 | 350 | 77 | 160 | 17 | 135 | 2 | 92 |
| | 90% | 10% | 82% | 18% | 72% | 28% | 58% | 42% | 32% | 68% | 11% | 89% | 2% | 98% |

- 1) 금융업 포함
- 2) 자료: TS2000

감사인 등록제는 모든 상장회사 감사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외감법에 의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이 최초로 시행된 2019년 9월,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감사인 1차 등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2019.9.26.), 2020년 상장회사 주기적 지정제 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1차 등록 회계법인인 20개⁷⁾에 불과했다. 직권지정 감사인이 될 수 있는 2차 및 3차 등록 회계법인까지 포함해도 37개로, 2018년 상장기업 감사인 수 126개보다 작다. <표 5>는 소속 공인회계사수에 따른 상장기업 감사인 분포를 나타낸다. 2018년 상장법인 감사인의 69.8%인 88개 회계법인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40명 미만으로, 상장기업의 16.3%(374개)가 이들을 감사인으로 선임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인 회계법인을 선임했던 상장기업은 보다 규모가 큰 등록감사인으로 교체해야 한다. 감사인이 소속 공인회계사 40인 이상인 회계법인이라도 미등록감사인이라면 상장기업은 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되기 직전인 2018년 상장회사 감사인 분포를 기준으로 추정한 감사인 교체가 필요한 상장기업은 21.3%⁸⁾에 달한다. 새로 도입된 감사인 등록제 하에서는 소규모(40인 미만) 회계법인의 시장 진입이 제한되므로, 소규모 상장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감사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워, 상장회사 감사시장의 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

7) 대형(감사 실무 수습을 완료한 감사 가능 등록 회계사 수 600명 이상) 4개, 중견(120명 이상) 5개, 중형(60명 이상) 9개, 소형(40명 이상) 2개로 총 20개이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9.9.27), 「2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8) ① 소속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인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했던 기업(상장기업의 16.3%)과 ② 소속 공인회계사 수 40인 이상~60명 미만 및 60인 이상~120명 미만인 회계법인 중 미등록감사인 비중 × 해당 감사인을 선임했던 상장기업 비중의 합 (16.3% + (100% - 76.5%) × 11.5% + (100% - 71.4%) × 9.8% = 21.8%

〈표 5〉 상장회사 감사인 규모(소속 공인회계사수)별 현황¹⁾

| 구분 (공인회계사수) | 회계법인 | | 등록감사인 비율(B) ³⁾ | 피감회사 수 (A) | | (A)*(B) |
|----------------|------|------------------|------------------------------|---------------|---------|--------------|
| | 회계법인 | 상장사 감사인 | | | | |
| >=600 | 4 | 4 | 100% | 1,005 | (43.8%) | 1,005 |
| >=120 | 5 | 6 ²⁾ | 100% | 430 | (18.7%) | 430 |
| >=60 | 11 | 11 | 76.5% | 263 | (11.5%) | 201 |
| >=40 | 16 | 17 ²⁾ | 71.4% | 224 | (9.8%) | 160 |
| <40 | 150 | 88 | 0.0% | 374 | (16.3%) | 0 |
| | 186 | 126 | | 2,296 | | 1,796 |

- 1) 2018년 말 기준
- 2) 기준일(2018.12.31.) 이후 합병으로 규모가 커진 회계법인이 포함됨
- 3) 2019년 말 등록현황 기준 해당 규모별 감사인 중 등록감사인 비율
- 4)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 및 감사인 현황' (kicap.or.kr)

감사인 등록제가 시행되었지만 차별화된 감사시장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 기업 규모별로 차별화된 감사 수요는 지정감사에서도 나타난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외부감사 규정’을 개정해 기업이 지정 회계법인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외부 감사인 등급하향 신청제’를 도입하였다. 기업과 지정감사인은 <표 6>과 같이 각각 가~마로 등급이 구분되어 기업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등급의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이 지정된다. 예를 들어 회사 ‘나’군에 속한 회사는 회계법인 ‘가’군 또는 ‘나’군에 속한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이 지정된다. 그러나 회사가 ‘가’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다.

〈표 6〉 감사인 지정 방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9항 관련)

| 구분 | 구분 기준 ¹⁾ | 구분 | 구분 기준 | | | | | 해당 회계법인 |
|----|---------------------|----|-----------------------|---------|---------------------------|---------|------------|---------|
| | | | 주사무소 소속 CPA수 | 감사 매출액 | 품질관리 담당이사(자) 비중 | 손해배상 능력 | 전년도 감사 상장수 | |
| 가군 | 5조원 이상 | 가군 | 600인 이상 | 500억 이상 | 품질관리 | 200억 이상 | 100사 이상 | 4개충족 |
| 나군 | 1조원이상 5조원미만 | 나군 | 120인 이상 | 120억 이상 | 업무 담당자 수 (이사 포함)의 120% 이상 | 60억 이상 | 30사 이상 | 4개충족 |
| 다군 | 4천억원이상 1조원미만 | 다군 | 60인 이상 | 40억 이상 | | 20억 이상 | 10사 이상 | 4개충족 |
| 라군 | 1천억원이상 4천억원미만 | 라군 | 30인 이상 | 15억 이상 | 2명이상 | 10억 이상 | 5사 이상 | 3개충족 |
| 마군 | 1천억원미만 | 마군 | 감사인 지정이 가능한 그 밖의 회계법인 | | | | | |

1)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기준

과거엔 기업보다 등급이 높은 회계법인으로만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규정은 등급이 낮은 회계법인으로의 재지정 신청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회사 등급보다 상위 등급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 등급 감사인에 대한 재지정 요청을 허용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하향조정의 근거와 기준을 마련했다. 동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다수의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들이 외부감사인 등급하향을 신청하였다. 재지정 신청 대다수는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이른바 ‘Big4’ 회계법인에 배치된 직권지정 기업들이 중소 회계법인으로 지정감사인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이와 같은 감사인 변경 요구는 자산 규모가 작은 중소형 상장사의 감사인에 대한 수요는 대기업과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기업은 대부분 Big4를 감사인으로 선임하나, 규모가 작은 기업은 중소회계법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회계감사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규모 회계법인을 상장회사 감사시장에서 배제하는 감사인 등록제는 차별화된 감사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상장회사 감사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감사인의 다양성이 제한되면, 시장 구조의 변화로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공급의 다양성은 감소하는 등 시장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등록감사인을 전제하는 주기적 지정제는 회계법인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감사시장 구조 변화의 폭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감사시장의 질서를 왜곡시키지 않는 시행 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감사품질과 등록요건

DeAngelo(1981)는 감사품질을 감사인이 피감사 기업의 회계시스템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할 확률과 이를 보고할 확률의 결합 확률로 정의하였다. 감사인의 효율성은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오류나 부정 등을 발견할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 Carcello et al.(2002)은 높은 감사품질을 ‘더 많은 감사 작업을 요구하는 고도의 보증’으로 정의하여 감사와 관련된 투입요소와 절차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감사 투입요소가 증가할수록 감사의 효율성이 상승해 높은 감사품질을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 구체적으로 감사시간, 감사보수, 회계법인의 규모, 산업전문성 등 감사인의 노력과 역량은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할 것이며 이러한 감사투입시간의 증가에 비례하여 감사보수 역시 상승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대형 회계법인은 대규모의 인적자원과 상호감리(peer reviews)로 고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과 지식의 공유는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감사인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하면 감사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표준감사시간과 감독기관의 회계법인 품질관리 실태 감리 및 감사인 등록제는 감사

인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하여 감사품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감사인 등록제는 상장기업 감사인에게 요구하는 감사 투입요소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감사품질은 감사인의 효율성이 전제되어야 달성할 수 있고, 감사인의 효율성은 감사 투입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감사품질은 효율적 감사인이 발견한 오류나 부정을 보고함으로써 비로소 달성된다. 외부감사에서 발견한 오류나 부정을 보고하는 데에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영향을 미친다. 감사인 지정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감사인 자유선택권을 제한한다. 감사인이 지정되면 지정기간 동안 감사인에 대한 교체 압력이 없고, 계속감사로부터 기대되는 경제적 준지대가 제한되므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향상될 수 있다(권수영 등 2004; 강선민·황인태 2007; 이세용 등 2007; 이세용 2009). 감사인의 독립성에는 감사인의 규모도 영향을 미친다. 대형 회계법인은 총수익에서 개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감사 실패 시 발생할 손실이 크기 때문에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인 등록제는 상장법인 감사인이 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을 유지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감사인 등록제는 감사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품질을 유지하도록 감사에 투입되는 자원, 감사인의 역량, 전문성 및 독립성 유지 동기 등을 통제한다. 감사인 등록제가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이 감사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즉, 등록요건으로 규정된 감사 투입요소가 유효한 감사품질 측정치의 역할을 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감사의 투입요소 및 산출물을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사용해왔다. 투입요소로는 감사시간, 감사보수, 회계법인의 크기, 산업전문성 등이 사용되어 왔고, 산출물로는 재량적발생액 등으로 추정된 피감회사의 이익조정수준 및 기타 이익의 질 측정치, 감리지적결과, 감사의견, 전기오류수정손익, 결산이익 정정, 조세회피수준 등이 사용되었다(최주안 등 2016). Aobdia(2019)는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감사품질 측정치와 감독기관이 실무에 적용하는 감사품질 측정치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감독기관 감사품질 측정치와의 일치 정도가 높은 산출요소는 재무제표 재작성과 소규모이익보고이며, 투입요소는 감사보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 등록 요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회계법인 규모가 영향을 미치는 Big4 여부와 산업전문성은 감독기관의 감사품질 평가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표준감사시간 도입으로 규제 대상이 된 감사시간도 감독기관의 감사품질 평가 결과와는 무관했다.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모든 규모의 기업에 대하여 Big4의 우월성이 일관되게 증명되지 않았는데, 황인태 등(2009)은 한국 감사시장은 다양한 감사조직이 다양한 회계서비스 수요를 가진 기업들에 대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질적 시장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중이지만, 외감법에 감사품질의 정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감사품을 제고하기 위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 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감사품질의 요건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외감법 제26조(증권위의 감리업무 등)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1.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감리와 2. 회사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 준수 여부 감리’ 업무를 한다고 규정한다. 동 법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감사인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감사기준(GAAS; Generally Accepted Audit Standard)에 따르지 않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정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외감법에서 규정하는 감사품질은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준거하여 작성되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GAAS를 준수하여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의견을 표명했을 때 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관찰하고 검증하기는 어렵다. 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의 적정성과 신뢰성은 외관상으로는 그 단서조차 발견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감사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파악하기 어렵고, 많은 부분은 감사인의 내적 확인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감사품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어려움 때문에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을 정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은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등록요건으로 설정하였다. 동 규정은 제8조 제1항에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에 대해 18개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18개 항목은 <표 1>과 같이 크게 (1) 인력(5항목),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6항목), (3) 심리체계(5항목), (4) 보상체계(2항목)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인력요건은 소속 공인회계사의 수, 대표이사과 품질관리업무 담당 인력의 경력, 품질관리업무 담당 인력이 전담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최소 인원 수 등을 규정한다.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은 감사품질관리를 위한 인사, 자금, 조직, 내규, 전산 등과 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고 감사투입시간을 측정하고 감사조서를 관리하는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심리체계는 중요한 감사업무에 대한 심리절차를 갖추도록 규정한다. 보상체계는 감사역량이 높은 인력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감사업무수행 이사의 성과측정 지표의 70% 이상을 감사품질 관련 항목으로 구성할 것과 품질관리업무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하여 품질관리 임원 및 담당자에게 소속 집단 평균 연봉 이상의 보상을 지급할 것을 규정한다.

감사인 등록제는 감사인의 효율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하여 높은 감사품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감독기관은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등록요건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등록요건과 감사품질과의 연관성이 실증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요건의 타당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합의도 부족하다. 감사인 등록제는 감사

시장 경쟁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감사품질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감사인 등록제 운용에는 감사품질에 미칠 영향이 다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감사인 등록제의 잠재적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인식과 의견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사인 등록제가 감사시장과 자본시장 참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등록 요건의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감사인과 비감사인, 대형 감사인과 중·소형 감사인의 감사인 등록요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하고, 등록제 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III. 연구 설계

설문조사는 2019년 6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⁹⁾. 회수된 응답지는 총 469장이었으나, 이 중 두 차례 중복 응답한 2명과 응답을 하지 않은 1명이 제외되어, 결과 분석에 이용된 응답자수는 466명이다. 설문조사 응답자에 대한 현황은 <표 7>과 같다.

<표 7> 설문조사 대상

Panel A. 총 응답자 현황(명)

| 성별 | 소속 기관 | 외부감사인 | 외부감사인 외(46) | | | | 합계 | |
|----|-------|-------------|-------------|-----------|------------------|-----------|----------|-------------|
| | | | 감독기관 | 교육기관 | 기업 ¹⁾ | 금융 및 투자기관 | | 기타 |
| 남 | | 394 | 3 | 27 | 6 | 2 | 4 | 436 (93.6%) |
| 여 | | 26 | 0 | 3 | 0 | 1 | 0 | 30 (6.4%) |
| 합계 | | 420 (90.1%) | 3 (0.6%) | 30 (6.4%) | 6 (1.3%) | 3 (0.6%) | 4 (0.9%) | 466 (100%) |

1) 금융 및 투자기관 제외

Panel B. 외부감사인 현황(명)

| 구분 | 감사인 유형 | Big4 | 중견회계법인 | 중소회계법인 | 감사반 | 합계 |
|--------------------|--------|------|--------|--------|-----|-------------|
| 1. 주요업무 | | | | | | |
| ① 감사 | | 111 | 88 | 153 | 2 | 354 (84%) |
| ② 세무 | | 3 | 3 | 14 | 1 | 21 (5%) |
| ③ 컨설팅 | | 4 | 11 | 17 | 1 | 33 (7.8%) |
| ④ 기타 ¹⁾ | | 2 | 3 | 7 | 0 | 12 (2.8%) |
| 2. 직급 | | | | | | |
| ① 파트너 | | 76 | 66 | 128 | 3 | 273 (65.0%) |

9) 설문조사는 한국공인회계사와 한국회계학회의 도움을 받아 2차례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 구분 \ 감사인 유형 | Big4 | 중견회계법인 | 중소회계법인 | 감사반 | 합계 |
|---------------|------------|------------|------------|---------|-------------|
| ② 디렉터/이사 | 11 | 18 | 39 | 0 | 68 (16.2%) |
| ③ 매니저/중간관리회계사 | 18 | 15 | 19 | 1 | 53 (12.6%) |
| ④ 시니어/담당회계사 | 11 | 4 | 4 | 0 | 19 (4.5%) |
| ⑤ 주니어/참여회계사 | 2 | 2 | 1 | 0 | 5 (1.2%) |
| ⑥ Staff/수습회계사 | 1 | 0 | 0 | 0 | 1 (0.2%) |
| ⑦ 미응답 | 1 | 0 | 0 | 0 | 1 (0.2%) |
| 3. 경력기간 | | | | | |
| ① 30년 이상 | 1 | 25 | 19 | 1 | 46 (11.0%) |
| ② 15년 이상 | 71 | 48 | 100 | 2 | 221 (52.6%) |
| ③ 10년 이상 | 22 | 20 | 43 | 1 | 86 (20.5%) |
| ④ 6년 이상 | 10 | 9 | 24 | 0 | 43 (10.2%) |
| ⑤ 2년 이상 | 11 | 2 | 3 | 0 | 16 (3.8%) |
| ⑥ 2년 미만 | 4 | 1 | 1 | 0 | 6 (1.4%) |
| ⑦ 실무수습 2년차 | 0 | 0 | 1 | 0 | 1 (0.2%) |
| ⑧ 실무수습 1년차 | 1 | 0 | 0 | 0 | 1 (0.2%) |
| 합계 | 120(28.6%) | 105(25.0%) | 191(45.5%) | 4(1.0%) | 420 (100%) |

1) 미응답자 1명 포함

Panel A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응답자 466명 중 약 90%에 해당하는 420명이 외부감사인였으며 나머지 46명(약 10%)은 기업, 교육기관 등 종사자였다. Panel B에는 응답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부감사인(420명)을 Big4, 중견회계법인(Local Top 10), 중소회계법인, 감사반 소속으로 구분하여 주요업무와 직급, 경력기간을 제시하였다. Big4에 소속된 외부감사인은 120명, 중견회계법인 소속은 105명, 중소회계법인은 191명이었으며, 이는 외부감사인 응답자 420명 중 각각 28.6%, 25%, 45.5%에 해당한다. 응답자 중 감사인 등록제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적은 감사반 소속 외부감사인은 4명에 불과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외부감사인의 주요업무는 감사(354명, 84%), 컨설팅(33명, 7.8%), 세무(21명, 5%) 순이고, 기타는 주요업무 관련 항목 미응답자 1명을 포함하여 12명으로 나타났다. 회계법인 내 직급이 높을수록 응답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았으며, 특히 파트너는 전체 외부감사인 응답자의 약 65%(273명)를 차지한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외부감사인의 경력은 ‘15년 이상’이 63.6%로 직급이 파트너인 응답자 비율과 비슷한데, 이는 직급과 공인회계사의 경력은 비례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외부감사를 주요 업무로 하는 회계법인의 파트너들이 감사인 등록제도에 관한 본 설문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을 알 수 있다¹⁰⁾.

10) 본 연구의 설문지는 [부록 1]로 제시한다. 또한, 감사인 등록요건의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외감규정 제8조제1항 관련)은 [부록 2]로 제시한다.

IV. 분석 결과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총 18가지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표 8>로 제시한다. 조사대상이 인지하는 감사인 등록요건 각 항목에 대한 타당성은 ‘보통 타당함(1점)’부터 ‘매우 타당함(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중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인력 요건을 살펴보면, ‘상시 근무 공인회계사 수 40명 이상’에 대한 5점 척도의 설문조사 평균값은 3.07로 다른 4가지 인력 요건보다 낮고 표준편차(1.54)는 가장 크다. 표준편차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5점 척도별 응답 비율을 보면, ‘① 상시 근무 공인회계사 수 40명 이상’의 항목에 대해 ‘보통 타당함(1점)’ 응답 비율이 27%로 가장 높고, ‘매우 타당함(5점)’이 두 번째(25%)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공인회계사 인원 요건에 대하여 응답자간 인식 차이가 매우 큼을 보여준다.

인력 요건 중 ‘②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경력기간’, ‘③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경력기간’, ‘④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와 담당자의 업무 범위’의 항목에 대해서는 ‘매우 타당함(5점)’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41%, 38%, 40%로 가장 높았다. ‘⑤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에 대해서는 3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한 응답 비율이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력 요건 중 공인회계사 숫자와 관련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응답자간 인식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8>에서 평균값이 ‘공인회계사 인원’ 항목의 평균값(3.07)보다 낮은 것은 세 항목이다. 업무방법 요건 중 ‘인사, 자금, 회계 등 경영통합관리체계 수립’과 보상체계의 두 항목인 ‘감사업무수행 이사의 성과평가지 감사품질 평가지표의 비중을 70% 이상으로 할 것’,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의 연봉 기준’으로, 평균값(표준편차)이 각각 2.60(1.61), 2.75(1.45), 2.52(1.48)이다. 이들 항목은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큰 감사인 등록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항별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감사인 등록요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항목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큰 4가지 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에 대하여 그룹별 차이를 검증하였다. 총 18개 항목에 대하여 <표 8>에는 비감사인과 감사인 그룹의 인식의 차이를, <표 9>은 감사인 그룹을 Big4, 중견회계법인, 중소회계법인으로 구분한 감사인 그룹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나타냈다.

검증 결과 총 18개 등록요건 중, 인력 요건 중 3개, 심리체계 요건 중 2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5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인과 비감사인간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구체적으로 ‘(1)-②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경력기간’,

11) 본 연구는 설문 응답자간 차이 분석을 위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χ^2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만, χ^2 (카

‘(1)-③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경력기간’, ‘(1)-⑤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3)-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경력 5년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심리를 수행’, ‘(3)-③ 대표이사가 서명하기 전에 심리 실시’ 요건에 대해서는 감사인과 비감사인간 이견이 없었다.¹²⁾ 특히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1)-②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경력기간’, ‘(1)-③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경력기간’은 감사인의 평균값이 비감사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에 대해 감사인의 호응도가 비감사인보다 높은 것은 흥미롭다.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인이 비감사인 이해관계자 못지않게 공감하고 있으므로 강제적 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등록요건이 과도하다는 일부 감사인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요건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한다면, 감사인과 비감사인의 인식의 차이가 없는 항목의 우선적인 제외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8개 항목 중 앞에서 언급한 5개 항목을 제외한 13개 항목은 감사인이 아닌 그룹과 감사인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이들 13개 항목 모두 비감사인 그룹의 평균값이 감사인의 평균값 보다 커, 비감사인 그룹이 인지하는 정책 타당도가 더 높았다. (1)-① 상시 근무 공인회계사 수 40명 이상, (2)-① 경영통합관리체계 수립, (4)-① 감사업무수행 이사의 성과평가지 감사품질 평가지표의 비중을 70% 이상으로 할 것, (4)-②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의 연봉 기준 등 4개 항목은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고 표준편차가 큰 데, 이는 감사인 그룹 응답의 평균값이 크게 낮은 데 기인한다. 이들 항목 중 상시 근무 공인회계사 수 40명 이상을 요구하는 인력 요건에 대한 소규모 회계법인의 반발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다른 3개 항목, 즉 경영통합관리체계 수립과 보상체계에 대한 감사인과 비감사인간의 응답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 등록요건은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감사업무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보상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이는 다수의 중소형 회계법인이 채택하고 있는 독립채산제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배구조 변경이 필요하기에 감사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

비감사인과 감사인 그룹 간 항목별 차이의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감사인을 조직

이제곱) 검증은 빈도가 적은 cell(5)이 전체 cell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통계량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응답자 수가 4명밖에 되지 않는 감사반을 이하의 감사인 간 분석에서 모두 제외하였다.

12) 이하에서는 해당 항목이 (1)인력, (2)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3)심리체계, (4)보상체계 중 어느 요건이 해당하는지를 이해하기 쉽도록 인력요건 중 첫 번째 항목의 경우에는 ‘(1)-①’로 표기한다.

13) (1)-① 상시 근무 공인회계사 수 40명이상, (1)-④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와 품질관리 담당자 업무범위, (3)-② 심리대상·범위·방법·절차, 심리담당자 자격요건, 권한, 책임 등을 구체적 명확히 규정 등의 3개 항목은 비감사인과 감사인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유의수준 5%)가 있었으며, 나머지 10개 항목은 1%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감사인 등록요건에 대한 Big4, 증견, 증소회계법인 간 인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그룹 간 차이가 없는 항목(4개)은 ‘(1)-②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경력기간’, ‘(3)-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회계사의 심리 수행’, ‘(3)-④ 감사업무 수행이사의 30% 이상에 대해 감사보고서 심리 실시’, ‘(3)-⑤ 중요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내용 문서화’이다. 따라서 이 네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인 등록요건 타당성에 대한 대·중·소 회계법인 간 인식의 차이가 없었다.¹⁴⁾

둘째, Big4와 증견회계법인 간에는 차이가 없으나 증소회계법인과는 차이가 있는 항목(1개)은 ‘(1)-④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업무 범위’로 나타났다.

셋째, 증견과 증소회계법인 간 차이는 없으나 Big4와는 차이가 있는 항목(8개)은 ‘(1)-②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경력기간’, ‘(2)-① 인사·자금·회계 등 경영통합관리체계 구축’, ‘(2)-④ 개별 감사업무 수행이사 선정 절차 및 방법의 공정성 등’, ‘(2)-⑤ 외부감사업무 수행 투입 시간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 체계 수립’, ‘(2)-⑥ 감사조서 등 감사관련 정보의 생산·보전 및 관리 체계의 구축과 운영’, ‘(3)-② 심리 대상과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4)-⑤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에 대한 소속 직급의 평균 연봉 이상 지급’이었다. 이 중 증견 및 증소회계법인이 타당성이 가장 낮다고 응답한 항목은 ‘(2)-① 경영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증견회계법인 응답의 평균값은 2.00, 증소회계법인은 1.71이다. 이는 해당 항목이 Big4를 제외한 증견과 증소회계법인에게 감사인 등록에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넷째, 세 그룹 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항목(5개)은 (1)-① 공인회계사 수(40명 이상), (1)-⑤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2)-②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2)-③ 독립성 점검 및 관리체계 수립, (4)-① 감사업무수행 이사의 성과평가서 감사업무 품질평가지표의 비중을 70% 이상 반영 등이다. 이상의 결과로 18개 항목 모두에서 규모를 기준으로 구분한 감사인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사인 그룹 간에 유의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항목이 존재하므로, 감독당국은 향후 감사인 등록요건과 관련한 제도 보완에 항목별 감사인 그룹 간 인식의 차이를 고려함으로써 규제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14) (1)-③ 품질관리담당자 경력기간은 세 감사인 그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식의 차이가 없다. (3)-⑤ 검토내용 문서화 등의 경우 Big4와 증견회계법인간의 통계적 차이(χ^2 -값 = 9.04)가 존재하지 않고, 증견과 증소회계법인 간의 통계적 차이(χ^2 -값 = 2.56)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 그룹 간 통계적 차이는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8〉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타당성: 비감사인인 과 감사인(총응답자수 466명)

| 구분 | ← 보통타당함 | | | | | 매우타당함 → | | | | | 응답자 그룹별 평균 | | 차이검증 |
|---|---------|-------|-------|-------|-------|---------|------|----------|----------|------------------|------------|--|------|
| | 1 | 2 | 3 | 4 | 5 | mean | std. | 비감사인(46) | 감사인(420) | $\chi^2 - value$ | | | |
| (1) 인력 | | | | | | | | | | | | | |
| ① 상시 근무 공인회계사 수 40명 이상 | 응답자수 | 124 | 50 | 81 | 93 | 118 | 3.07 | 1.54 | 3.26 | 3.05 | 12.49* | | |
| | 비율 | (27%) | (11%) | (17%) | (20%) | (25%) | | | | | | | |
| ②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경력기간 ¹⁾ | 응답자수 | 43 | 35 | 79 | 116 | 193 | 3.82 | 1.30 | 3.54 | 3.85 | 5.97 | | |
| | 비율 | (9%) | (8%) | (17%) | (25%) | (41%) | | | | | | | |
| ③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경력기간 | 응답자수 | 47 | 49 | 86 | 107 | 177 | 3.68 | 1.34 | 3.54 | 3.70 | 7.23 | | |
| | 비율 | (10%) | (11%) | (18%) | (23%) | (38%) | | | | | | | |
| ④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업무 범위 ²⁾ | 응답자수 | 60 | 42 | 82 | 94 | 188 | 3.66 | 1.41 | 3.87 | 3.64 | 12.40* | | |
| | 비율 | (13%) | (9%) | (18%) | (20%) | (40%) | | | | | | | |
| ⑤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³⁾ | 응답자수 | 64 | 62 | 129 | 110 | 101 | 3.26 | 1.31 | 3.37 | 3.25 | 5.24 | | |
| | 비율 | (14%) | 13% | (28%) | (24%) | (22%) | | | | | | | |
|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 | | | | | | | | | | | | |
| ① 인사, 자금, 회계 등 경영통합관리체계 수립 | 응답자수 | 196 | 52 | 57 | 65 | 96 | 2.60 | 1.61 | 3.87 | 2.46 | 44.27** | | |
| | 비율 | 42% | 11% | 12% | 14% | 21% | | | | | | | |
| ② 지배구조 건전성 및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 | 응답자수 | 79 | 52 | 99 | 100 | 136 | 3.35 | 1.43 | 4.17 | 3.26 | 24.28** | | |
| | 비율 | 17% | 11% | 21% | 21% | 29% | | | | | | | |
| ③ 독립성 점검·관리 체계 운영 | 응답자수 | 32 | 19 | 89 | 131 | 195 | 3.94 | 1.18 | 4.24 | 3.91 | 13.37** | | |
| | 비율 | 7% | 4% | 19% | 28% | 42% | | | | | | | |
| ④ 개별 감사업무 수행 이사 선정 절차 및 방법의 공정성·투명성·합리성 | 응답자수 | 55 | 61 | 110 | 112 | 128 | 3.42 | 1.33 | 4.07 | 3.35 | 23.57** | | |
| | 비율 | 12% | 13% | 24% | 24% | 27% | | | | | | | |
| ⑤ 외부감사업무 수행 투입시간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 체계 | 응답자수 | 52 | 52 | 95 | 117 | 150 | 3.56 | 1.34 | 4.15 | 3.50 | 30.11** | | |
| | 비율 | 11% | 11% | 20% | 25% | 32% | | | | | | | |
| ⑥ 감사조서 등 감사관련 정보 생산·보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 응답자수 | 34 | 44 | 102 | 129 | 157 | 3.71 | 1.23 | 4.11 | 3.67 | 22.61** | | |
| | 비율 | 7% | 9% | 22% | 28% | 34% | | | | | | | |

| 구분 | ← 보통타당함 매우타당함 → | | | | | 문항별 | | 응답자 그룹별 평균 | | 차이검정 $\chi^2 - value$ |
|--|---------------------------|----|-----|-----|-----|------|------|------------|----------|--------------------------|
| | 1 | 2 | 3 | 4 | 5 | | | 비검사인(46) | 검사인(420) | |
| (3) 심리체계 | 응답자수 | 22 | 31 | 75 | 120 | 218 | 4.03 | 4.07 | 4.03 | 3.53 |
| | 비율 | 5% | 7% | 16% | 26% | 47% | 1.15 | | | |
| 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경력 5년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심리를 수행 | 응답자수 | 22 | 32 | 76 | 152 | 184 | 3.95 | 4.17 | 3.93 | 11.99* |
| | 비율 | 5% | 7% | 16% | 33% | 39% | 1.12 | | | |
| ② 심리 대상·범위·방법·절차, 심리담당자 자격요건, 권한 및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 | 응답자수 | 29 | 22 | 68 | 136 | 211 | 4.03 | 4.09 | 4.02 | 1.78 |
| | 비율 | 6% | 5% | 15% | 29% | 45% | 1.16 | | | |
| ③ 대표이사가 서명하기 전에 심리 실시 ¹⁾ | 응답자수 | 46 | 60 | 126 | 136 | 98 | 3.39 | 3.80 | 3.34 | 19.72** |
| ④ 감사업무 수행이사의 30% 이상에 대해 그 이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심리 실시 | 응답자수 | 47 | 36 | 117 | 126 | 140 | 3.59 | 4.28 | 3.52 | 19.70** |
| ⑤ 중요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내용 문서화 | 응답자수 | 47 | 36 | 117 | 126 | 140 | 3.59 | 4.28 | 3.52 | 19.70** |
| 비율 | 10% | 8% | 25% | 27% | 30% | 1.27 | | | | |

| (4) 보상체계 | mean | | | | | std. | | 비검사인(46) | | 검사인(420) | | $\chi^2 - value$ |
|--|------|-----|-----|-----|-----|------|------|----------|------|----------|---------|------------------|
| | 1 | 2 | 3 | 4 | 5 | | | | | | | |
| ① 감사업무수행 이사의 성과평가 시 감사품질 평가지표의 비중을 70% 이상으로 할 것 | 응답자수 | 146 | 51 | 113 | 84 | 72 | 2.75 | 1.45 | 3.89 | 2.63 | 33.89** | |
| | 비율 | 31% | 11% | 24% | 18% | 15% | 1.48 | | | | | |
| ②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연봉을 각각 소속 이사 및 소속 공인회계사 평균 연봉 이상으로 책정 | 응답자수 | 178 | 69 | 93 | 53 | 73 | 2.52 | 1.48 | 3.72 | 2.38 | 35.97** | |
| | 비율 | 38% | 15% | 20% | 11% | 16% | | | | | | |

** , * : 1%, 5%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1) 대표이사는 10년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7년 이상.

2) 업무범위: 품질관리 관련 업무만을 수행

3) 공인회계사가 40명 이상 70명 이하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를 1명 이상, 71명 이상 100명 이하는 2명 이상, 101명 이상 300명 이하는 2명에 100명을 초과한 인원의 2%를 합한 수 이상(소수점 이하 절사), 301명 이상은 6명에 300명을 초과한 인원의 1%를 합한 수 이상(소수점 이하 절사)

4)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정상주식회사, 금융회사, 감사인지정 회사, 분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수행한 회사, 그 밖에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 크거나 감사위험이 높은 회사의 경우

< 표 9 > 상징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타당성: Big4 vs 증권회계법인 vs 중소회계법인(총응답자수 416명⁵⁾)

| 변수 | 회계법인(416) ¹⁾ 응답자 그룹별 평균 | | 감사인그룹별 차이검정 (χ^2 -값) | Big4 vs 증권 중소 | Big4 vs 중소 | Big4 vs 증권 중소 |
|---|---------------------------------------|-------------------|----------------------------------|---------------------|---------------|---------------------|
| | Big4 (120) | 중· 중소 (191) | | | | |
| (1) 인력 | | | | | | |
| ① 상시 근무 공인회계사 수 40명 이상 | 3.91 | 3.41 | 2.29 | 100.90** | 12.48* | 86.29** |
| ②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경력기간 ¹⁾ | 4.04 | 3.96 | 3.66 | 18.73* | 10.86* | 11.78* |
| ③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경력기간 | 3.78 | 3.72 | 3.61 | 8.43 | 3.34 | 6.92 |
| ④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업무 범위 ²⁾ | 4.13 | 4.02 | 3.09 | 55.57** | 1.97 | 37.88** |
| ⑤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³⁾ | 3.58 | 3.44 | 2.93 | 33.13** | 9.90* | 18.85** |
|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 | | | | | |
| ① 인사, 자금, 회계 등 경영통합관리체계 수립 | 3.98 | 2.00 | 1.71 | 177.30** | 90.64** | 150.91** |
| ② 지배구조 건전성 및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 | 4.14 | 3.21 | 2.69 | 87.32** | 33.58** | 71.33** |
| ③ 독립성 점검·관리 체계 운영 | 4.56 | 3.92 | 3.48 | 69.40** | 25.83** | 61.50** |
| ④ 개별 감사업무 수행 이사 선정 절차 및 방법의 공정성·투명성·합리성 | 4.27 | 3.11 | 2.90 | 96.90** | 50.20** | 85.06** |
| ⑤ 외부감사업무 수행 투입시간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 체계 | 4.43 | 3.35 | 2.98 | 91.30** | 43.96** | 85.45** |
| ⑥ 감사조서 등 감사관련 정보 생산·보전 관리 체계 구축·운영 | 4.47 | 3.52 | 3.23 | 92.32** | 45.39** | 81.95** |
| (3) 심리체계 | | | | | | |
| 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경력 5년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심리를 수행 | 4.23 | 3.96 | 3.93 | 17.65* | 9.01 | 15.70** |
| ② 심리 대상·범위·방법·절차, 심리담당자 자격요건, 권한 및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 | 4.35 | 3.91 | 3.69 | 34.98** | 16.38** | 32.12** |
| ③ 대표이사가 서명하기 전에 심리 실시 ⁴⁾ | 4.46 | 3.93 | 3.79 | 33.21** | 15.92** | 30.88** |
| ④ 감사업무 수행이사의 30% 이상에 대해 그 이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심리 실시 | 3.67 | 3.32 | 3.15 | 18.89* | 6.54 | 16.16** |
| ⑤ 중요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내용 문서화 | 3.78 | 3.53 | 3.31 | 20.20** | 9.04 | 17.05** |
| (4) 보상체계 | | | | | | |
| ① 감사업무수행 이사의 성과평가 시 감사품질 평가지표의 비중을 70% 이상으로 할 것 | 3.68 | 2.20 | 2.16 | 113.75** | 73.53** | 79.13** |
| ②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연봉을 각각 소속 소속 공인회계사 평균 연봉 이상으로 책정 | 3.15 | 2.09 | 2.03 | 58.83** | 34.27** | 52.65** |

** : 1%, 5% 수준에서 유의함

1), 2), 3), 4)의 설명은 < 표 8 >을 참조

5) χ^2 (카이제곱) 검증은 빈도가 적은 cell(5)이 전체 cell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통계치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사빈(총 응답자수 4명) 그룹은 분석에서 제외

<표 9>의 결과에서 감사인 그룹 간에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감사인 등록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세 그룹으로 구분한 감사인들의 의견을 비감사인 그룹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비감사인의 항목별 평균값은 세 감사인 그룹별 평균의 중위값과 비슷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1)-① 공인회계사 수 40명 이상’ 항목에 대한 비감사인 응답의 평균은 3.26으로, Big4(3.91)와 중견회계법인(3.41)보다는 낮고 중소회계법인(2.29)보다는 높다. 이는 중대형 감사인 그룹은 대부분의 감사인 등록요건에 대해 비감사인들보다 그 타당성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과 <표 9>의 그룹별 비교에서 감사인이 아닌 그룹(비감사인)이 모든 감사인 그룹의 평균보다 높게 응답한 3개 항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2)-②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와 ‘(4)-① 성과평가시 감사업무 품질평가지표의 비중을 70% 이상으로 할 것’, ‘(4)-②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의 보상을 각각 소속 직급 이상으로 책정’이다. (2)-②, (4)-①, (4)-②의 비감사인그룹 응답의 평균은 각각 4.17, 3.89, 3.72로 Big4(4.14, 3.68, 3.15), 중견회계법인(3.21, 2.20, 2.09), 중소회계법인(2.69, 2.16, 2.03)과 비교하여 모든 감사인 그룹의 응답 평균값보다 높았다. 이는 회계법인의 지배구조와 감사품질 평가를 고려한 회계인력의 보상체계 개선에 감사인 등록요건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비감사인들이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사인은 감사품질 개선을 위한 감사인 조직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18개 항목 중 2개 항목은 비감사인 응답의 평균이 모든 감사인 그룹보다 낮았다. ‘(1)-② 대표이사 등 경력기간’, ‘(1)-③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경력기간’의 비감사인 평균값은 각각 3.54로 모든 감사인 그룹의 평균보다 낮았다. 따라서 경력기간에 대한 인력 요건은 회계법인 간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감사인들이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감사인 등록요건의 축소가 필요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8개 항목 중 10개 항목은 감사인 등록요건의 타당성에 대한 Big4의 응답 평균값이 비감사인 그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 등록요건은 회계법인에 대한 규제일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감사인 그룹이 비감사인들보다 규제의 타당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등록요건 중 상당수가 Big4가 이미 충족하고 있거나 쉽게 충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일 수 있다. 등록요건을 Big4는 쉽게 달성할 수 있으나 중소회계법인은 준수하기 어렵다면, 감사인 등록제가 중소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 Big4의 과점을 심화시킬 수 있다. 감사품질은 감사인의 규모로만 측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형회계법인이 아니면 충족하기 어려운 기준을 등록요건으로 설정한다면, 감사인 등록제가 감사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감사품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감사인 등록제가 일부 감사인을 위한 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의 타당성에 대해 Big4를

제외한 감사인들과 다양한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사인 등록제는 그 특성상 감사인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규제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항목에 대한 특정 감사인 그룹의 호응이 일반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높은 현상은 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 도입의 목적이 명확하다 하더라도 제도 집행의 과정과 방향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감사인의 규모나 통합관리체계 유무가 감사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감사인 그룹 간 이견이 있다. 중소형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의 숫자나 통합관리체계의 존재가 상장회사 감사인의 필수 요건으로서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한다. 감사품질은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감사인 간 등록요건의 타당성에 대한 이견은 감사품질과 연관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를 드러낸다. 이에 외감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18개 항목 이외에 감사인의 감사품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여러 대응치들이 감사품질을 측정하거나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는 지표로 어느 정도 적합한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10>과 <표 11>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 10개 항목 모두에 대하여 비감사인은 감사인보다 감사품질 측정치로서 적합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감사인과 비감사인 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감사인 그룹 내에서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Big4—중견회계법인—중소회계법인 순으로 적합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⑤ 회계법인내 회계사의 이직률 및 감사팀 구성원의 변동’에 대한 인식 차이는 감사인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비감사인과 감사인 모두 정도 차이는 있으나 감사담당자에 대한 교육비 지출이 감사품질 측정치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적합도가 가장 낮은 항목으로 비감사인은 ‘회계감사업무 매출액이 회계법인 전체 매출액 중 50% 미만’을 꼽아, 경제적 의존도와 감사품질과의 연관성은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감사인은 ‘외국 법인과의 제휴’의 감사품질 측정치로서의 타당도를 가장 낮게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에서 관찰이 용이한 항목과 감사업무 수행 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감사품질 측정치로서 Big4는 전산감사 등 전문가 조직 보유 여부, 중견 및 중소회계법인은 각각 손해배상 능력과 감사담당자에 대한 교육비 지출을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감사품질 관련 요소에 대해서도 감사인 그룹간에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상징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의 추가항목 적합성(총응답자수 466명)

| 구분 | ← 보통적합함 ····· 매우적합함 → | | | | | mean | std. | 응답자 그룹별 평균 | | 차이검증 $\chi^2 - value$ |
|---|-----------------------|-----|-----|-----|-----|------|------|------------|----------|--------------------------|
| | | | | | | | | 비감사인(46) | 감사인(420) | |
| | 1 | 2 | 3 | 4 | 5 | | | | | |
| ① 손해배상 능력 | 응답자수 | 95 | 70 | 124 | 87 | 90 | 1.39 | 3.30 | 2.98 | 12.86* |
| | 비율 | 20% | 15% | 27% | 19% | 19% | | | | |
| ② 외국 회계감독기구에 등록 | 응답자수 | 200 | 73 | 95 | 48 | 50 | 1.39 | 3.07 | 2.22 | 19.02** |
| | 비율 | 43% | 16% | 20% | 10% | 11% | | | | |
| ③ 외국법인과의 제휴 | 응답자수 | 206 | 70 | 86 | 54 | 50 | 1.40 | 3.11 | 2.21 | 26.26** |
| | 비율 | 44% | 15% | 18% | 12% | 11% | | | | |
| ④ 감사참여 전문가 조직 보유 (전산감사·세무·가치평가·수주산업 등 전문가) | 응답자수 | 86 | 66 | 108 | 89 | 117 | 1.43 | 3.91 | 3.10 | 26.69** |
| | 비율 | 18% | 14% | 23% | 19% | 25% | | | | |
| ⑤ 회계법인내 회계사의 이직률 및 감사팀 구성원의 변동 | 응답자수 | 116 | 77 | 118 | 77 | 78 | 1.40 | 3.39 | 2.78 | 18.88** |
| | 비율 | 25% | 17% | 25% | 17% | 17% | | | | |
| ⑥ IT infra 보유정도 | 응답자수 | 102 | 77 | 127 | 88 | 72 | 1.36 | 3.59 | 2.82 | 21.60** |
| | 비율 | 22% | 17% | 27% | 19% | 15% | | | | |
| ⑦ 회계감사업무 매출액이 회계법인 전체 매출액 중 50% 미만 | 응답자수 | 161 | 90 | 130 | 47 | 38 | 1.27 | 2.87 | 2.33 | 9.63* |
| | 비율 | 35% | 19% | 28% | 10% | 8% | | | | |
| ⑧ 감사방법론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 응답자수 | 84 | 71 | 106 | 109 | 96 | 1.38 | 3.93 | 3.05 | 26.99** |
| | 비율 | 18% | 15% | 23% | 23% | 21% | | | | |
| ⑨ 감사담당자에 대한 교육비 지출 | 응답자수 | 62 | 66 | 111 | 126 | 101 | 1.31 | 4.11 | 3.21 | 22.90** |
| | 비율 | 13% | 14% | 24% | 27% | 22% | | | | |
| ⑩ 감사보고서의 철회 및 재발행 | 응답자수 | 91 | 68 | 156 | 90 | 61 | 1.28 | 3.74 | 2.83 | 23.60** |
| | 비율 | 20% | 15% | 33% | 19% | 13% | | | | |

** , * : 1%, 5%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11〉 상징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의 추가항목 적합성: Big4 vs 중견회계법인 vs 중소회계법인(총응답자수 416명¹⁾)

| 변수 | 회계법인(416)1) 응답자그룹별 평균 | | | 그룹별차이검정 (χ^2 -값) | Big4 vs 중견 | Big4 vs 중소 | 중견 vs 중소 |
|---|-----------------------|-------------|-------------|---------------------------|---------------|---------------|-------------|
| | Big4 (120) | 중견 (105) | 중소 (191) | | | | |
| ① 손해배상 능력 | 3.82 | 3.10 | 2.39 | 88.58** | 22.48** | 79.80** | 20.71** |
| ② 외국 회계감독기구에 등록 | 3.43 | 2.04 | 1.55 | 147.16** | 53.00** | 132.95** | 17.59** |
| ③ 외국법인과의 제휴 | 3.39 | 2.12 | 1.50 | 151.14** | 44.01** | 135.27** | 28.71** |
| ④ 감사참여 전문가 조직 보유 (전신감사·세무·가치평가·수주산업 등 전문가) | 4.41 | 2.78 | 2.46 | 171.22** | 87.47** | 140.58** | 5.54 |
| ⑤ 회계법인내 회계사의 이직률 및 감사팀 구성원의 변동 | 3.03 | 2.70 | 2.64 | 10.16 | 4.68 | 8.73 | 2.27 |
| ⑥ IT infra 보유정도 | 3.95 | 2.69 | 2.18 | 141.06** | 53.92** | 122.53** | 13.80** |
| ⑦ 회계감사업무 매출액이 회계법인 전체 매출액 중 50% 미만 | 2.88 | 2.13 | 2.07 | 39.74** | 21.78** | 30.70** | 1.36 |
| ⑧ 감사방법론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 4.16 | 2.76 | 2.50 | 133.96** | 66.01** | 111.39** | 5.80 |
| ⑨ 감사담당자에 대한 교육비 지출 | 4.13 | 2.94 | 2.77 | 100.48** | 52.26** | 84.85** | 6.43 |
| ⑩ 감사보고서의 철회 및 재발행 | 3.23 | 2.75 | 2.59 | 25.80** | 8.88 | 23.05** | 3.78 |

** , * : 1%, 5%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1) χ^2 (카이제곱) 검증은 빈도가 적은 cell(5)이 전체 cell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통계적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연구결과외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감사반(총응답자수 4명) 그룹은 분석에서 제외.

추가로 총 18개 항목에 대하여 파트너와 아닌 그룹 간에 대·중·소 회계법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직급(파트너 여부)은 감사인 등록요건에 대한 인식 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외감법 개정으로 도입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설문 결과, 이해관계자들은 감사인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많은 데다 18가지 항목 내에 양적요소와 질적요소가 혼재되어 감사인 등록요건을 일시에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은 ‘상장법인 감사인 지정’의 선행요건이다. 따라서 감사인 등록제도가 기존 감사시장 구조에 큰 폭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등록요건과 감사품질의 관계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감사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등록요건의 타당성에 대한 설문 결과, 중견과 중소회계법인간 차이는 없으나 Big4와는 의견 차이가 있는 항목이 다수 존재했다. 이들은 ‘(1)-②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경력 기간’, ‘(2)-① 인사·자금 등 경영통합관리체계 구축’, ‘(2)-④ 개별 감사업무 수행이사 선정 절차 및 방법의 공정성 등’, ‘(2)-⑤ 외부감사 투입 시간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 체계’, ‘(2)-⑥ 감사조서 등 감사관련 정보의 생산, 보전 및 관리체계 구축과 운영’, ‘(3)-② 심리대상과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4)-⑤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에 대한 소속 직급의 평균 연봉 이상의 보상 지급’ 등의 8개 항목이다. 감사인 간 이견을 이익집단 간 이해상충의 문제로 간주하면 효과적인 제도의 운용을 도모하기 어렵다. 등록기준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져야 규제순응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품질관리 담당이사 및 담당자의 보수 기준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형 회계법인은 특정 개인의 소득이 평균값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중앙값이나 최소, 최대치를 제외한 평균값을 사용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 볼 수 있다.

감사인 등록기준과 지정기준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은 기업과 감사인 감독당국 등 이해관계자들의 관련 제도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여지가 있다. 감사인 등록제가 효과적으로 운용되어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기준과 감사인 지정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마’단계로 구분된 기업과 감사인 등급에 따라 감사인 지정이 이루어

지는 점을 고려하여, 감사인 등록요건도 동일한 단계로 구분하여 상장기업의 감사 범위를 정하는 방안을 본 연구는 제안한다. 즉 18개 항목을 모두 갖춘 회계법인에 대하여 ‘가’단계(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조원 이상)로 구분된 기업에 대한 감사를 허용한다거나, ‘마’단계의 CPA수 30인 이상 기준과 동일하게 감사인 등록요건의 최소인원을 30인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기업을 포함한 기업경제 전체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모든 감사인의 감사품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감사인 등록요건의 단계적 차등화는 중소형 감사인에게 감사인 등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감사인의 등록을 유도할 수 있다. 외감법에 의한 회계감사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인의 감사품질 상향 균등화가 가져올 사회적 이익은 매우 크다. 등록감사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감사품질 기준을 준수해야하므로, 감사인 등록 범위 확대는 감사시장의 평균적인 감사품질 수준을 제고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편,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된 감사인 등록기준 마련은 실증연구 등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등록요건 중 ‘지배구조 건전성 및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의 경우 비감사인의 설문 평균값은 4.17(<표 8>)로 모든 감사인(<표 9> Big4 4.14/중견 3.21/중소 2.69)보다 높다. 따라서 회계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할 때 사회적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감사인에게 모든 기업에 대한 감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이해관계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실증분석에 근거한 정책 결정과정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체계적 연구에서 도출된 외적 증거를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증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 making)을 강조한다(Davies 1999). 영국은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증거와 분석의 적극적인 활용을 토대로 한 증거기반정책을 제도 구축과 개선에 적용하고 있으며¹⁵⁾, 미국도 2016년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법(Evidence-Based Policy making Commission Act, 2016)을 제정하여 증거기반정책 구현을 위한 조직구조를 구축하였다(오세영 등 2017). 감사인 등록제는 감사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증적 증거에 근거한 정책효과와 영향의 분석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5) 1997년 Tony Blair 총리가 정부 개혁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증거기반정책을 제시함에 따라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 영국 정부는 “The Modernizing Government White Paper(Cabinet Office 1999)”를 통해 증거기반 정부개혁의 방향성과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이후 ‘증거기반’은 정부부처를 비롯하여 연구기관, 싱크탱크 등 다양한 정책 커뮤니티의 핵심이 되었다(Sutcliffe and Court 2005). 영국 정부는 정책 과정 및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연구지원기관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연구결과를 증거기반정책에 활용하는 등, 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감사품질과 관련 있는 감사인 등록 요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상대적 타당성 인식 차이를 통계적 검증을 통하여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최근 다수 상장기업들이 감사인 재지정을 요구한 가운데, 감독당국의 등록감사인 추가 및 감사인 등록방식 변경은 향후 감사인 등록제도의 운영과 정착을 위해 기업과 감사인, 감독당국 상호간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논문편집위원회가 제정·공표한 「학술지 연구윤리규정」을 엄정히 준수하였습니다.

【 참고 문헌 】

- 강선민·황인태, “감사인 지정과 재량적 발생액의 변화: 기업과 감사인의 역할”, 『회계학연구』 제32권 제4호, 2007, pp.115-150.
- 권수영·노준화·배길수, “감사인 지정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는가? 감사인 순환과 감사인 유지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9권 제4호, 2004, pp.191-218.
- 노준화·전영순·배길수, “지정감사인이 더 높은 감사보수를 받는가?”, 『회계학연구』 제28권 제4호, 2003, pp.177-202.
- 오세영·윤건·오균, 「증거기반정책을 위한 정부의 통계 구축 및 활용에 대한 현황 조사」, 2017,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www.kipa.re.kr
- 이세용, “감사인 지정 사유의 차이와 시장의 차별적 반응”, 『세무와 회계저널』 제10권 제2호, 2009, pp.171-198.
- 이세용·노밝은·정형록, “감사인 지정에 대한 시장반응”, 『한국회계학회 2007년 동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7.
- 최주안·박현영·이호영, “지정감사인제도와 감사보수, 그리고 신규상장기업의 감사품질”,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2016, pp.3366-3391.
- 황인태·강선민, “지정감사인의 감사보수는 과연 적정한가?” 『회계저널』 제5권 특별호, 2006, pp.91-122.
- 황인태·강선민, “지정기업 실증분석을 통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 IFRS 도입 환경을 중심으로”, 『회계정보연구』 제32권 제2호, 2014, pp.251-280.
- 황인태·강선민·정도진, “Big4 감사품질의 우수성은 모든 규모의 기업에 적용되는가?”, 『경영학연구』 제38권 제1호, 2009, pp.1-34.
- Aobdia Daniel, “Do practitioner assessments agree with academic proxies for audit quality? Evidence from PCAOB and internal inspect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67, 2019, pp.144-174.
- Carcello, J. V., Hermanson, D. R., Neal, T. L., & Riley Jr, R. A., “Board characteristics and audit fee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 19 No. 3, 2002, pp.365-384.
- Davies, P., “What is evidence-based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47 No. 2, 1999, pp.108-121.
- DeAngelo, L. E.,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3, 1981, pp.183-199.
- Shailer, G., L. Cummings, E. Vatuloka, and S. Welch, “Discretionary Pricing in a Monopolistic Audit Market”, *International Journal of Auditing*, 2004 August, pp.263-277.
- Sutcliffe, Sophie and Court, Julius, *Evidence-Based Policy making: What is it? How does it work? What relev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2005, No. Folleto 1427.

[부록 1] 설문지

2020년부터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가 시행되며, 올해 5월부터 등록 접수를 받고 심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등록요건을 검토하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하여 18개 등록요건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여 등록요건 심사 등 감사인 등록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세미나에 앞서 설문조사를 통하여 등록요건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감사인 등록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조사의 내용은 연구와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본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과 관련 의견이나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구진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I. 설문응답자의 특성

1. 귀하의 소속기관에 체크(√)해 주십시오.

- | | |
|----------------|------------------------|
| ① (외부)감사인() | ② 감독기관() |
| ③ 교육기관() | ④ 기업체(금융 및 투자기관 제외)() |
| ⑤ 금융 및 투자기관() | ⑥ 기 타() |

※※※※※ ① 외로 응답한 경우 2번 설문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1-1) 귀하가 소속된 (외부)감사인의 유형(2019년 5월말 등록 기준)에 체크(√)해 주십시오.

- | | |
|----------------|--------------------|
| ① BIG4 회계법인() | ② 중견/BIG10 회계법인() |
| ③ 중소회계법인() | ④ 감사반() |

1-2) 회계법인에서 귀하의 주요 업무에 체크(√)해 주십시오.

- | | | | |
|------|------|-------|-------|
| ① 감사 | ② 세무 | ③ 컨설팅 | ④ 기 타 |
|------|------|-------|-------|

1-3) 귀하의 직급에 체크(√)해 주십시오.

- ① 파트너 ② 디렉터/이사 ③ 매니저/중간관리회계사 ④ 시니어/담당회계사
 ⑤ 주니어/참여회계사 ⑥ Staff/수습회계사

1-4) ‘실무수습 후’ 등록회계사로서의 경력기간에 체크(√)해 주십시오.

- ① 30년 이상 () ② 15년 이상 () ③ 10년 이상 ()
 ④ 6년 이상 () ⑤ 2년 이상 () ⑥ 2년 미만 ()
 ⑦ 실무수습 1년차 () ⑧ 실무수습 2년차 ()

2. 귀하의 성별에 체크(√)해 주십시오. ① 남 () ② 여 ()

II.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타당성 (다음의 ①~⑤에 체크(√)해 주십시오)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이 아래 요약되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등록요건의 상세한 사항을 보기 원하시는 경우를 위하여 설문지 하단에 [별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외감규정 제8조제1항 관련)을 첨부하였습니다.

(1) 인력

■ 귀하는 인력에 관한 다음 항목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으로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보 통 타당함 | | 매 우 타당함 | | | | | | | |
|---|------------|----------------------|-----------------------|---|---|---|---|---|---|---|
| ① 상시 근무 공인회계사수 40명이상 단, 지방회계법인은 20명이상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②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경력기간 대표이사:10년,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7년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③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경력기간 5년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④ 품질관리 담당이사와 품질관리 담당자 업무범위 품질관리 관련 업무만을 수행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⑤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 | | | | | | | | | |
| 40명~70명 | 71명~100명 | 101명~300명 | 301명~ | | | | | | | |
| 1명 이상 | 2명 이상 | 2명+100명 초과× 2% 이상 | 6명+ 300명초과 × 1% 이상 |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 귀하는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에 관한 다음 항목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으로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보통 타당함 | 매우 타당함 |
|---|-----------------------|-----------|
| ① 인사, 자금, 회계 등 경영통합관리체계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② 지배구조 건전성 및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 대표이사 및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체계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③ 독립성 점검·관리 체계 운영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④ 개별 감사업무 수행 이사 선정 절차 및 방법의 공정성·투명성·합리성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⑤ 외부감사 업무 수행 투입 시간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 체계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⑥ 감사조서 등 감사관련 정보 생산·보전 관리 체계 구축·운영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3) 심리체계

■ 귀하는 심리체계에 관한 다음 항목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으로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보통 타당함 | 매우 타당함 |
|---|-----------------------|-----------|
| 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경력 5년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심리를 수행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② 심리의 대상·범위·방법·절차, 심리담당자의 자격요건, 권한 및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③ 대표이사가 서명하기 전에 심리 실시: 주관상장법인, 대형비장상주식회사, 금융회사, 감사인지정 회사, 분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수행한 회사, 그 밖에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 크거나 감사위험이 높은 회사의 경우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④ 감사업무 수행이사의 30% 이상에 대해 그 이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심리실시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⑤ 중요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내용 문서작성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4) 보상체계

■ 귀하는 보상체계에 관한 다음 항목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으로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보통 타당함 | 매우 타당함 |
|--|-----------------------|-----------|
| ① 감사업무 수행 이사의 성과평가시 감사업무 품질 평가지표 비중이 70% 이상 감사업무품질평가지표에는 1)금융위, 증선위, 한공회의 조치유무 또는 수사기관 공소제기 여부, 2) 내부규정 준수여부 및 심리결과, 3)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 는데 투입한 시간 및 독립성 유지상태에 대한 점검결과, 4) 교육시간, 5) 해당 사업연도에 함께 감사업무를 수행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②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소속이사의 평균연봉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소속 공인회계사의 평균연봉 이상 지급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III. 등록요건으로 추가할 항목 (다음의 ①~⑤에 체크(√)해 주십시오)

감사품질은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대응 측정치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감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18개 항목이외에 다음 항목이 감사품질을 측정하거나 감사 품질에 영향을 주는 지표로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적합하지않음 | 매우 적합함 |
|--|-----------------------|-----------|
| ① 손해배상 능력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② 외국 회계감독기구에 등록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③ 외국법인과의 제휴 | | |
| ④ 파트너의 감사업무 집중도(담당파트너의 전체 업무시간 대비 해당 기업에 대한 감사 투입시간 비율) | | |
| ⑤ 회계법인내 회계사의 이직률 및 감사팀 구성원의 변동 | | |
| ⑥ 매니저 및 스태프의 업무 부담 | | |
| ⑦ 회계감사업무 매출액이 회계법인 전체 매출액 중 50% 미만인 경우 | | |
| ⑧ 감사방법론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 | |
| ⑨ 감사담당자에 대한 교육 | | |
| ⑩ 감사보고서의 철회 및 재발행 | | |

2-4) 위에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감사인 등록요건으로 적합한 것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

1. 인력

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이하 “공인회계사”라 한다)를 40명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인(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회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인회계사를 20명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나. 대표이사(감사보고서에 서명을 하는 대표이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감사인의 대표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사업무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지정한 담당이사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력기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이후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일 것

- 1) 대표이사: 10년 이상
- 2)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7년 이상

다.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제외하며, 이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라 한다)은 경력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라.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만을 수행한다.

- 1) 품질관리 제도의 설계 및 관리
- 2) 감사보고서 발행 전·후 심리(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중요한 판단사항 및 감사보고서 작성 내용을 감사조서, 증빙자료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감사의견에 흠결이 없도록 하는 품질관리 활동을 말한다)
- 3) 법령등·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품질관리기준 등 외부감사 시 준수해야할 사항에 관한 자문
- 4) 외부감사 업무 수임 전의 감사위험(감사인이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부적절한 감사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무 확인 등 타당성 검토
- 5) 품질관리 관련 교육훈련 기획 및 운영
- 6) 법 제26제1항제3호에 따른 감리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사항 이행상태 점검
- 7) 감사조서 관리
- 8)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 등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마.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는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가 20명 이상 40명 미만인 지방회계법인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공인회계사 수 | 40명~70명 | 71명~100명 | 101명~300명 | 301명~ |
|---------------|---------|----------|---|---|
|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수 | 1명 이상 | 2명 이상 | 2명에 100명을 초과한 인원의 2%를 합한 수 이상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6명에 300명을 초과한 인원의 1%를 합한 수 이상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2.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 가.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내 인사(人事), 수입·지출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감사업무 수임(受任) 및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의 통합 관리를 위한 체계(이하 이 호에서 조직,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을 말한다)를 갖추거나,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및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
- 다. 감사업무를 수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인회계사가 독립성(감사의견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지하였는지를 신뢰성있게 점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
- 라. 개별 감사업무에 대해 독립성과 전문성(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험, 감사대상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충분히 갖춘 것을 말한다)을 가진 자가 담당 이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 절차 및 방법이 공정성, 투명성 및 합리성을 가질 것
- 마. 소속 공인회계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한다)가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
- 바. 감사조서 등 감사업무 관련 정보의 생산부터 보존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

3. 심리체계

- 가.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또는 경력기간이 5년 이상인 공인회계사로서 일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이 심리를 수행할 것

- 나. 심리의 대상·범위·방법·절차, 심리를 담당하는 사람의 자격요건, 권한 및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할 것
-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는 대표이사가 서명을 하기 전에 심리를 거칠 것
 - 1) 주권상장법인
 -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3) 금융회사
 - 4)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 5) 분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사
 - 6) 그 밖에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 크거나 감사위험이 높은 회사
- 라.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 중 100분의 30 이상에 대하여 그 이사가 담당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심리할 것
- 마.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은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할 것

4. 보상체계

- 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에서 감사업무를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
 - 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치유무 또는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여부
 - 2) 내부규정 준수여부 및 심리결과
 - 3)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한 시간 및 독립성 유지상태에 대한 점검결과
 - 4) 교육시간
 - 5) 해당 사업연도에 함께 감사업무를 수행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 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평균 연봉(기본급여, 성과에 따른 급여, 그 밖에 부가급여 등 급여의 성격을 불문하고 매년 지급되는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은 그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봉보다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하여 지급할 것
 - 1)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이사인 경우: 소속 이사의 평균 연봉
 - 2)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이사가 아닌 경우: 소속 공인회계사(이사는 제외한다)의 평균 연봉

Survey on the auditor registration requirements of listed firms and audit quality

In Tae Hwang* / Sun Min Kang** / Mi Joo Lee***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llect the opinions of the stakeholders concerned with the impact of auditor registration requirements of listed firms on audit quality through a survey and seek effective measures for improvements of the auditor registration requirements. As a result of the survey with a total of 466 responden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uditors and non-auditors, and there were differences in opinions according to the size of auditors concerning most auditor registration requirements. In a considerable number of requirements, the validity of regulation recognized by the non-auditor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the auditor group. Especially, concerning criteria for the number of CPAs (more than 40 persons), integrated business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audit personnel's performance assessment criteria, and the remuneration criteria for quality management personnel, auditors' resistance was great. As a result of verification of the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by the size of auditors, compared to Big4, the validity cognized by other accounting firms is significantly low for eight requirements. From this, we infer that small and medium-sized accounting firms have more difficulty in auditor registration. For some registration requirements, Big4's responses were higher than non-auditors' responses. This result might because Big4 have already met these requirements or may easily meet them. If it is easy for Big4 to achieve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but it is difficult for small and medium-sized accounting firms, the auditor registration regulation may distort the audit market structure and market efficiency.

Non-auditor respondents valued the improvement of the governance of accounting firms and the compensation system for auditors more than auditors did. This result suggests that auditors should recognize social demands for the change of the auditors' organization for the improvement of audit quality. To narrow the difference of opinions among the stakeholders concerned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to increase adaptation to the regulation, and meeting social demands for audit qualit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between auditors and non-auditors and opinion of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primary author), e-mail: ithwang@cau.ac.kr,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hung-Ang University research grant in 2019.

**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co-author), e-mail: skang@cau.ac.kr

*** Economist, Bank of Korea(corresponding author), e-mail: mijoolee@bok.or.kr

each auditor group.

This study has a contribution that it proposed the difference in the cognition of relative validity among various stakeholders concerned with auditor registration requirements related to audit quality through statistical verification. Recently, several listed firms have asked for auditor reassignment, the supervisory authority's registered auditor addition and auditor registration method changed. It means that an understanding among companies, auditors, and supervisory authorities is required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auditor registration regulation.

Key Words : auditor registration regulation, auditor registration requirement, mandatory auditor reassignment, integrated business management system, small and medium-sized accounting firm